

청년월세지원사업



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신청자	나이	만 19세 ~ 39세 이하
	지원 조건	<p>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총 자산 3억8천만원 이하</p> <p>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& 총 자산 1억7백만원이하</p> <p>월세기준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 ※ 단,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이하이면 지원가능</p> <p>자기진단서비스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 → 청년월세지원 ※ 하단<사업안내>클릭</p>
지원 제외 기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포함), 2촌이내 주택임차,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전국 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부모와 함께거주하는 경우, 정부의 청년주거지원사업참여자, 소득, 자산기준초과자

지원내용

- 월세지원 1인당 매월 최대20만원씩
- 지원기간 최대12개월(회)지원
※ 생애 1회
- 지원규모 6,000명

지원절차

- 신청방법 만19세~34세 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만35세~39세 -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※ 단, 동구(주민자치과), 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구청에서만 접수

• 신청 및 진행과정



- 문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((440-2906), 미추홀콜센터(032-120), LH (1600-0777)